학사경고 및 학사제적 규정

제 정 2009. 3.

개 정 2011. 12.

개 정 2015. 10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학칙 제 55조 및 제 56조의 규정에 의거 학사경고 및 학사제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부과대상) ①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1학기와 여름학기의 성적이, 2학기와 겨울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1.50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부과한다.

②학생으로서 연속하여 3회 또는 통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학사 제적할 수 있다.

③최소수강학점 9학점 미만에서 취득한 성적은 학사경고 및 제적대상 성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가 학업 지속 의사가 분명한 경우 학부(과)단위평가(심의)위원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제적을 아니할 수 있다.(신설 2015.09.17.)

제3조(대상자 확정) 1학기와 여름학기, 2학기와 겨울학기 학업성적 처리 완료 4주 이내에 학사경고 및 학사제적 대상자를 파악하여 학부단위 평가위원회의 확인과 성적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.(개정 2011.12.26.)

제4조(부과시기) 학사경고 및 학사제적을 부과하는 시기는 1학기와 여름학기, 2학기와 겨울학기말 성적 처리 완료 4주 이내에 실시한다.(개정 2011.12.26.)

제5조(사실통보) ①학사경고 및 학사제적을 부과하는 경우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 및 소속 학부에 통보하여야 한다.(개정 2011.12.26.)

②학부에서는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 특별히 학사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강신청 및 학점제한) ①학사경고가 부과된 학생에 대하여는 1,2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15학점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.

②2회 이상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상위학기 교과목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6조의2(학습법 참여) 학사경고자로 확정된 자는 다음 학기 개시 전 혹은 학기 개시 후 1회 이상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.(신설 2011.12.26.)

제7조(학적부 정리) 학사경고 및 학사제적자가 최종 확정되어 사실통보가 이루어지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학적부에 정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기타사항) 학사경고 및 학사제적에 관하여 학칙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적평가관 리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의 특례) 이 규정는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